의안번호	2200914
의 뢰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4.7.29.
추계번호	24B1311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3억 3,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6억 9,200만원(연평균 13억 3,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안 제7조제1항) -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1,324	1,324	1,324	1,324	1,324	6,620	1,324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안 제10조)	14	14	14	14	14	72	14
추가재정소요	1,338	1,338	1,338	1,338	1,338	6,692	1,33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제1항(지원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이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이라 함)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6조(지원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함(제1항)	의무·재량 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지원기준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제2항)	
4	안 제7조(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2항)	
5	안 제10조(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함)를 둠(제1항)	의무규정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제1항(지원대상 등)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인상분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3	안 제6조(지원기준)		* **(필수농자재)** 농약·비료·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자재 – 제정안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산식이 필요함 추가재정소요 $= \sum_{i,j}$(필수농자재 구입수량×지원단가×지원율)$_{i,t}$ 이때, 지원단가 = (구입(사용)가격 – 기준가격) > 0인 경우에 해당 – t는 추계기간(향후 5년), – i는 유형별 필수농자재 ($i=1$일 때 비료, $i=2$일 때 사료, $i=3$일 때 농약, $i=4$일 때 농업기계,… 등) – 그러나 필수농자재 등의 유형 및 유형별 지원기준, 각 농가의 구입·사용량, 기준가격 대비 구입·사용가격의 인상 여부 및 그 차액, 100분의 70 이상의 지원율 등의 예측이 불가하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법에 따라 비료, 사료, 면세유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참고자료 1] 농업경영체에 대한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등 지원 현황 참고 [참고자료 2] 농사용 전력판매단가 참고
4	안 제7조(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제1항) • 유사사례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 실태조사
		×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2항)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서는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ISP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구축계획을 예측하기 곤란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5	안 제10조(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	• 유사사례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안 제7조제1항)

❑ 제정안은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3031-324) 사업 및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

○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비용은 1,324백만원으로 가정

- '수급정보조사' 및 '국내가격정보조사'의 2024년도 예산 평균 금액

※ 이때,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내 유사 실태조사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조사 내용	2024년 예산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3031-324)	수급정보조사	주요 농산물 수급정보 생산·전파로 선제적 수급대책 수립 및 비축사업등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	1,144
	국내가격정보조사	농수산물 도·소매가격 등 수집·제공으로 시장 거래주체의 출하·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및 합리적 소비지원으로 농산물수급안정 도모	1,504
평균			1,3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필수농자재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비용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66억 2,000만원으로 추계

[표 3]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1,324	1,324	1,324	1,324	1,324	6,6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4.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안 제10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의신청[1] 심사를 위해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위원회의 정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

- 위원회 정원은 15명으로, 이 중 민간위원 수는 12명(정원의 약 80%)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는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안건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2]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1) 안 제9조(이의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은 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표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021~2023년

(단위: 명, 회)

	정원 (A=B+C)	공무원 (B)	민간 위원 (C)	정원대비 민간위원 비율 (C/A)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횟수			연평균
					2021	2022	2023	
농업재해보험심의회	21	7	14	66.7%	3	3	4	3.3
농림종자위원회	15	4	11	73.3%	5	8	4	5.7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15	3	12	80.0%	10	8	1	6.3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15	3	12	80.0%	2	2	—	1.3
평균	17	4	12	74.2%	5	5	2	4.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4.6.

❑ 추계 결과,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7,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2	12	12	12	12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사례금 단가(C, 백만원/명·회)	0.3	0.3	0.3	0.3	0.3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14	14	14	14	14	72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대해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업경영체에 대한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등 지원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개요	법적근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60-377)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인상차액의 80%)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3733-329)	축산농가가 외상구매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리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업자금이차보전 (1038-301)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3031-305 / 306)	농업용 면세유,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규모 시설원예농가의 난방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지원 예산: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필수농자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60-377)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가격상승분의 80%) 지원 *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	180,099	100,000	28,815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3733-329) -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345,000	355,000	355,000	300,000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 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10,878	34,694	31,730
	- 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	14,384	20,834
농업에너지 비용(유류비)	시설농가유가보조금 한시지원 (3031-305/306)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22.10~12)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지원 추진 - 지원단가: 월별('22.10~12월)·유종별 평균가격-기준가격('22년 5월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 × 50%(국고보조율)	—	15,118	—	6,97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농업용 면세유 지원현황

※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 제도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개요>

- **목적**: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용 유류 구입가격에 포함된 모든 세액에 대해 면세 적용('86.3.1.~)
-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 **면제 세금(5종)**: 교통세·소비세·교육세·자동차세·부가세
- **면세 유종(6종)**: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윤활유, LPG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트랙터·콤바인 등 42개 기종

<최근 4년간 농업용 면세유 제도에 따른 면세액 현황: 2020~2023년>

구분	연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윤활유	LPG	합계 (kl/백만원)
공급량 (kl)	'20	85,299	843,127	442,469	29,713	259	11,726	1,412,593
	'21	87,015	852,466	439,787	28,902	218	14,053	1,422,441
	'22	87,284	860,222	422,408	30,461	200	15,211	1,415,786
	'23	86,769	847,081	363,843	28,611	187	14,034	1,340,525
면세액 (백만원)	'20	74,568	540,509	63,833	2,621	125	1,298	682,954
	'21	75,972	546,705	80,165	2,714	115	1,717	707,388
	'22	59,596	462,968	83,894	3,809	117	2,315	612,699
	'23	62,050	409,323	71,780	3,679	117	2,131	549,0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농사용 전력판매단가

(한국전력공사)[3]

❑ 농사용 전력판매단가

○ 현행 전기요금체계는「전기사업법」제16조,[4] 한국전력의「기본공급약관」및「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에서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5]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농사용전력은 다른 계약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 계약종별: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계약종별 전력판매단가 추이: 2019~2023년>

(단위: 원/kWh)

연·월 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합계
2019	104.95	130.33	103.85	106.56	47.74	113.91	67.38	108.66
2020	107.89	131.60	103.99	107.35	48.45	114.35	67.03	109.80
2021	109.16	128.47	101.69	105.48	45.95	112.97	65.66	108.11
2022	121.32	139.10	111.53	118.66	56.89	124.53	74.26	120.51
2023	149.75	169.46	138.83	153.71	75.10	152.70	101.85	152.80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년 한국전력통계」, 제93호, 2024.5.31., 146쪽에서 발췌·정리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지식센터 > 전기자료 > 전력통계 > 한국전력통계)

---

3) 한국전력공사,「2023년 한국전력통계」, 제93호, 2024.5.31.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지식센터 > 전기자료 > 전력통계 > 한국전력통계)

4)「전기사업법」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한국전력공사,「기본공급약관」<2024.2.1.>
제55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60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이하 생략)

<2024년 농사용전력 전기요금표>

(2024년 7월 1일 시행)

구분		기본요금(원/kW)	전력량 요금(원/kWh)	
갑		360	41.9	
을	저압	1,150	59.5	
	고압(A,B)	1,210	여름철(6~8월)	62.2
			봄·가을철 (3~5, 9~10월)	60.2
			겨울철(11~2월)	62.2

주: 1.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및 유인용 전등

자료: 한전ON > 전기요금 전기요금표 > 한글 전기요금표 > 농사용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5.jsp>